

의안번호	제468호
의결 연월일	2016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9월 27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8
----------	-----

제출연월일 : 2016년 9월 27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과 신설 및 전문경력관 조정 등 정원 변동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직종·직급별 정원조정 (안 별표 3)
 - 일 반 직 : +2명 (6급 +1, 7급 +1)
 - 전문경력관 :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
 - 연 구 직 : +2명 (연구관 +2)
-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 (안 별표2)
 - 연구관 : 19%이내 → 20%이내
 - 연구사 : 81%이상 → 80%이상

3. 의안전문 : 불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불 임

5. 관계법령 발취 : 불 임

6. 비용추계서 : 불 임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제3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9급	전문경력관
비 율	6% 이내	18% 이내	32% 이내	33% 이내	9.5% 이상	1.5% 이내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 율	20% 이내	80% 이상	26% 이내	74% 이상

3. 소방직공무원

구 분	소방정이상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비 율	1% 이내	3% 이내	10% 이내	9% 이내	15% 이내	31% 이내	31% 이상

4. 별정직공무원

구 분	4급상당 이상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비 율	34% 이내	26% 이내	10% 이내	10% 이내	18% 이내	2% 이상

※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 청	의 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 계	3,298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445	-				
1~2급	1					1
2~3급	2	1	1			
3급	9	7		1		1
3~4급	2	2				
4급	68	43	7	5	7	6
5급이하 소계	1,345	-				
전문경력관 소계	18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				
연구직 계	157	-				
연구관	30	1		27	2	
연구사	127	-				
지도직 계	26	-				
지도관	6			6		
지도사	20	-				
소방직 계	1,614	-				
소방정	15	4		11		
소방령이하	1,599	-				
교육공무원 계	43	-				
총장	1			1		
교수·부교수· 조교수전임강사	30			30		
조교	12	-				

※ 복수별정은 별정에 포함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2.연구직·지도직공무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연구직</th> <th colspan="2">지도직</th> </tr> <tr> <th>연구관</th> <th>연구사</th> <th>지도관</th> <th>지도사</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19% 이내</td> <td>81% 이상</td> <td>26% 이내</td> <td>74%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19% 이내	81% 이상	26% 이내	74% 이상	<p>[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채정기준 (제3조제2항 관련) 2.연구직·지도직공무원</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colspan="2">연구직</th> <th colspan="2">지도직</th> </tr> <tr> <th>연구관</th> <th>연구사</th> <th>지도관</th> <th>지도사</th> </tr> </thead> <tbody> <tr> <td>비율</td> <td>20% 이내</td> <td>80% 이상</td> <td>26% 이내</td> <td>74%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0% 이내	80% 이상	26% 이내	74% 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19% 이내	81% 이상	26% 이내	74% 이상																																																																																																																																																																																																																																																																																																																																																																													
구분	연구직		지도직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비율	20% 이내	80% 이상	26% 이내	74% 이상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rowspan="2">총계</th> <th rowspan="2">본청</th> <th rowspan="2">의회</th> <th rowspan="2">직속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h rowspan="2">출장소</th> </tr> <tr>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td> <td>3,29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도지사</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td> <td>1,444</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2급</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2~3급</td> <td></td> <td>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td> <td>9</td> <td>7</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3~4급</td> <td></td> <td>2</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td> <td>68</td> <td>43</td> <td>7</td> <td>5</td> <td>7</td> <td>6</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td> <td>1,343</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td> <td>19</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 상당</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 상당</td> <td></td> <td>3</td> <td>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상당 이하 소계</td> <td></td> <td>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td> <td>15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관</td> <td></td> <td>28</td> <td>1</td> <td></td> <td>26</td> <td>1</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td> <td>12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td> <td>2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관</td> <td></td> <td>6</td> <td></td> <td></td> <td>6</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td> <td>2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3,295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444			-			1~2급		1					1	2~3급		2	1	1				3급		9	7		1		1	3~4급		2	2					4급		68	43	7	5	7	6	5급이하 소계		1,343			-			전문경력관 소계		19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55			-			연구관		28	1		26	1		연구사		127			-			지도직 계		26			-			지도관		6			6			지도사		20			-					.			.			<p>[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제4조 관련)</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rowspan="2">총계</th> <th rowspan="2">본청</th> <th rowspan="2">의회</th> <th rowspan="2">직속기관</th> <th rowspan="2">사업소</th> <th rowspan="2">출장소</th> </tr> <tr> </tr> </thead> <tbody> <tr> <td>총계</td> <td></td> <td>3,29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정무직 계</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도지사</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 계</td> <td></td> <td>1,44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2급</td> <td></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1</td> </tr> <tr> <td>2~3급</td> <td></td> <td>2</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r> <tr> <td>3급</td> <td></td> <td>9</td> <td>7</td> <td></td> <td>1</td> <td></td> <td>1</td> </tr> <tr> <td>3~4급</td> <td></td> <td>2</td> <td>2</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td> <td></td> <td>68</td> <td>43</td> <td>7</td> <td>5</td> <td>7</td> <td>6</td> </tr> <tr> <td>5급이하 소계</td> <td></td> <td>1,345</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전문경력관 소계</td> <td></td> <td>1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별정직 계</td> <td></td> <td>12</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급 상당</td> <td></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급 상당</td> <td></td> <td>3</td> <td>3</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급상당 이하 소계</td> <td></td> <td>8</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직 계</td> <td></td> <td>15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연구관</td> <td></td> <td>30</td> <td>1</td> <td></td> <td>27</td> <td>2</td> <td></td> </tr> <tr> <td>연구사</td> <td></td> <td>127</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직 계</td> <td></td> <td>26</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지도관</td> <td></td> <td>6</td> <td></td> <td></td> <td>6</td> <td></td> <td></td> </tr> <tr> <td>지도사</td> <td></td> <td>20</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3,298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445			-			1~2급		1					1	2~3급		2	1	1				3급		9	7		1		1	3~4급		2	2					4급		68	43	7	5	7	6	5급이하 소계		1,345			-			전문경력관 소계		18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57			-			연구관		30	1		27	2		연구사		127			-			지도직 계		26			-			지도관		6			6			지도사		20			-					.			.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3,295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444			-																																																																																																																																																																																																																																																																																																																																																																												
1~2급		1					1																																																																																																																																																																																																																																																																																																																																																																										
2~3급		2	1	1																																																																																																																																																																																																																																																																																																																																																																													
3급		9	7		1		1																																																																																																																																																																																																																																																																																																																																																																										
3~4급		2	2																																																																																																																																																																																																																																																																																																																																																																														
4급		68	43	7	5	7	6																																																																																																																																																																																																																																																																																																																																																																										
5급이하 소계		1,343			-																																																																																																																																																																																																																																																																																																																																																																												
전문경력관 소계		19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55			-																																																																																																																																																																																																																																																																																																																																																																												
연구관		28	1		26	1																																																																																																																																																																																																																																																																																																																																																																											
연구사		127			-																																																																																																																																																																																																																																																																																																																																																																												
지도직 계		26			-																																																																																																																																																																																																																																																																																																																																																																												
지도관		6			6																																																																																																																																																																																																																																																																																																																																																																												
지도사		20			-																																																																																																																																																																																																																																																																																																																																																																												
		.			.																																																																																																																																																																																																																																																																																																																																																																												
직급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총계		3,298			-																																																																																																																																																																																																																																																																																																																																																																												
정무직 계		1	1																																																																																																																																																																																																																																																																																																																																																																														
도지사		1	1																																																																																																																																																																																																																																																																																																																																																																														
일반직 계		1,445			-																																																																																																																																																																																																																																																																																																																																																																												
1~2급		1					1																																																																																																																																																																																																																																																																																																																																																																										
2~3급		2	1	1																																																																																																																																																																																																																																																																																																																																																																													
3급		9	7		1		1																																																																																																																																																																																																																																																																																																																																																																										
3~4급		2	2																																																																																																																																																																																																																																																																																																																																																																														
4급		68	43	7	5	7	6																																																																																																																																																																																																																																																																																																																																																																										
5급이하 소계		1,345			-																																																																																																																																																																																																																																																																																																																																																																												
전문경력관 소계		18			-																																																																																																																																																																																																																																																																																																																																																																												
별정직 계		12			-																																																																																																																																																																																																																																																																																																																																																																												
1급 상당		1	1																																																																																																																																																																																																																																																																																																																																																																														
4급 상당		3	3																																																																																																																																																																																																																																																																																																																																																																														
5급상당 이하 소계		8																																																																																																																																																																																																																																																																																																																																																																															
연구직 계		157			-																																																																																																																																																																																																																																																																																																																																																																												
연구관		30	1		27	2																																																																																																																																																																																																																																																																																																																																																																											
연구사		127			-																																																																																																																																																																																																																																																																																																																																																																												
지도직 계		26			-																																																																																																																																																																																																																																																																																																																																																																												
지도관		6			6																																																																																																																																																																																																																																																																																																																																																																												
지도사		20			-																																																																																																																																																																																																																																																																																																																																																																												
		.			.																																																																																																																																																																																																																																																																																																																																																																												

관계 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112조 (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⑥ (생략)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분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 ⑤ (생략)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비용추계서

1. 개정사유

-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경력관 조정 등에 따른 정원 변동 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

2. 비용 발생 요인

- 지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 발생

3. 관련조문

- 직종·직급별 정원조정 내역 (안 별표 3)
 - 일 반 직 : +2명 (6급 +1, 7급 +1)
 - 전문경력관 :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
 - 연 구 직 : +2명 (연구관 +2)

4. 비용 추계결과

- 재정수반요인 : 공무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 소요
- 추계의 전제 : 증원 +3명
- 추 계 결 과 : 인건비 243백만원 정도 추가 소요
- 재원조달방안 : 도비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단위:천원)

구 분	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세 출	1,294,420	243,810	251,124	258,658	266,418	274,410
공무원 인건비	1,294,420	243,810	251,124	258,658	266,418	274,410

※ 매년 임금인상률 3%(예상치) 적용 계산

6. 작성자 :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문석구